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6일
발 의 자 : 박기열·김인제·김미경
이상목·김선갑·김동욱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윤·박마루·우미경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 공공시설의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알리고 협의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와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치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알리고 협의토록 함(안 제11조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와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치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p> <p>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u> 교부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현행과 같음)</p> <p>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u> 교부할 수 있다.</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와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치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